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요 논의 및 한국 정부 활동 분석 보고

2026. 7.



정책협력국
국제인권과

목 차

1. 개요	1
2. 국제 인권 상황 브리핑(유엔인권최고대표)	1
3. 주제별 인권 동향	
1) 시민적·정치적 권리	2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	
• 법관 임명의 원칙	
• 디지털 감시 생태계가 초래하는 위축 효과와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새로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7
• 농업, 식량안보, 그리고 인권	
• 빈곤의 구조적 재생산	
•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기후와 건강으로 식량 시스템 전환하기	
• 교육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교육과정, 교수법 및 평가	
3) 디지털과 인권·기업과 인권	11
• 새롭고 부상하는 디지털 기술과 인권: 인공지능(AI)에 대한 인권 실사 및 국가의 의무	
•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부합하는 기업 관행	
4) 여성·아동·소수자 인권	12
• 여성과 소녀의 인권, 인공지능, 그리고 관련된 디지털 기술	
•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퀴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5) 이주민 인권·인종차별	15
• 스포츠와 인종주의	
• 이주 거버넌스의 외주화: 새로운 경향과 쟁점	
4. 유엔 인권이사회 20주년 기념 고위급 토론	16
5. 신규 선출된 특별절차 수임자	18

참고 1. 제62차 인권이사회 결의 한국 정부 투표 현황

참고 2. 제62차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상국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린 권고

1 개요

- 올해는 인권이사회 출범 20주년임. 제62차 인권이사회에서는 향후 역할과 성과를 조명하는 내용의 고위급 토론이 진행되었고 관련 결의도 통과되었음. 특히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음.
-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기업활동에 대한 논의도 확대됨. 기업과 인권, 표현의 자유, 허위정보, 교육권 등 다양한 의제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인권책임과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등에 관한 특별절차 보고서와 국가 간 논의가 확대되었음.
- 기간: 2026년 6월 15일(월)~7월 8일(수)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채택된 보고서: 113개(주제별 특별절차 수임자의 국가방문 보고서 포함)
- 채택된 결의: 28개(25개 합의로 통과, 3개 투표로 통과)
- 13개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 결과보고서 채택
- 4명의 특별절차 수임자 신규 선출
- 6번의 패널 토론 개최

2 국제 인권 상황 브리핑(유엔인권최고대표)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상으로 감행한 공격 이후에 악화된 중동 정세에 우려를 표하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사회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고 지적함. 특히 이란 국민들이 외부의 무력 충돌과 국내의 정치적 억압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함. 나아가 모든 당사국에게 폭력을 자제하고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함.
- 가자지구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2025년 10월 휴전 이후에도 천여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이주,

토지 몰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촉구하며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 무엇보다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드론과 치명적 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무기들이 수단,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가자지구, 미얀마 등에서 민간인과 핵심 사회 기반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함.
- 전 세계적으로 원조 예산이 삭감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 백만 명이 기아, 빈곤, 강제이주, 불안정에 노출되고 있지만, 세계 군사비 지출은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이러한 불안정, 불평등, 취약한 거버넌스가 특히 미주 지역, 사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사우 등에서 극단주의, 무력분쟁, 초국경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함.
- 성평등과 성소수자 권리가 축소되고 있음. 여성혐오적 담론, 온라인 혐오표현,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성소수자 공동체를 겨냥한 차별적 법률과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가나, 니제르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나아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포함.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여러 국가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할 것을 촉구함

3 주제별 인권 동향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2/24)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2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며, 평시뿐 아니라 무력충돌, 비상사태, 동원령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재확인함. 또한 현역뿐 아니라 예비군과 직업군인에게도 해당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선택적·부분적 병역거부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과 적용 대상 확대 등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민간 중심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개선하였고, 일부 국가는 예비군과 직업군인까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함.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대체복무 절차의 투명성 등은 개선되었으나, 36개월의 복무기간과 교정시설 중심의 복무 형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징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자유권 위원회의 우려가 재차 언급됨.
- 한편 다수 국가에서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국가는 무력충돌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반복 처벌, 자의적 구금, 차별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권옹호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제한 사례도 보고됨.
- OHCHR는 국가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법률상 명확히 인정하고, 독립적·공정한 심사절차와 비징벌적·비차별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예비군과 직업군인을 포함한 모든 군 복무 형태에 권리를 적용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권리 보장을 유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반복처벌을 중단하고 전과 말소 및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함.

○ 법관 임명의 원칙(사법독립 특별보고관, A/HRC/62/43)

- 유엔 특별보고관은 법관 임명 절차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법관 임명 원칙을 제시함. 보고서는 법관 임명이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자질과 능력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확산에 따라 정치권이 법관 임명 절차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관 임명제도의 독립성 확보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함.

- 보고서는 법관 임명 원칙을 △제도적 기반 △선발 기준 △임명 절차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총 15개 원칙을 제시함. 제도적 기반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선발기구 운영 및 임시·대행 법관 임명의 엄격한 제한을 제안하였으며, 선발 기준에서는 능력과 청렴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사전에 공개된 기준을 적용하고,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며 이해충돌과 정치적 편향을 방지할 것을 강조함. 또한 임명 절차에서는 절차의 투명성, 평등한 접근권, 구조화된 면접 및 평가 방식, 임명 사유의 공개, 적시 임명, 효과적인 불복절차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자의적·정치적 임명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함.
- 특별보고관은 각국에 법관 임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적인 선발기구를 중심으로 능력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발할 것을 권고함. 또한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 다양성 증진, 정치적 개입 방지, 임명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수단 마련 및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 디지털 감시 생태계가 초래하는 위축 효과와 집회의 결사 자유 침해(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A/HRC/62/45)

-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감시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이러한 위축효과가 전 세계 시민사회, 인권옹호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평가함.
- 보고서는 디지털 감시가 국가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와 결합된 '감시 생태계(surveillance ecosystem)'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함. 얼굴인식, 생체인식, 스파이웨어, 통신 감청, AI 기반 분석, 드론, 스마트시티 인프라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연계되어 개인의 이동, 사회활동, 정치적 견해 및 결사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시는 국가안보나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감시로 인해 시민들이 집회 참석, 시민단체 가입, 기

자·변호사·활동가와의 접촉, 온라인 의견 표명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또한 감시는 상호 불신과 사회적 고립(desocialization)을 심화시키고, 인권단체의 회원 모집, 연대 활동, 정보 공유, 모금 및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하며, 활동가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지속적인 불안·과잉경계(hypervigilance)를 초래하는 등 개인과 시민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

- 나아가 이러한 위축효과가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차별금지 등 여러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는 '복합적 피해(compound harm)'를 발생시키므로, 국가와 기업은 모든 디지털 감시기술의 설계·개발·도입·운영 전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위축효과를 인권법적 평가의 핵심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별보고관은 각국에 △평화적 집회와 시민사회 활동을 감시·억압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 금지 △엄격한 법적 근거와 사법적 통제에 따른 감시 제도 운영 △AI 및 생체인식 등 고위험 감시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 실사의 의무화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피해자 구제 △기업의 인권책임 강화 등을 권고함. 특히 얼굴인식,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 사회신용평가,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침입형 스파이웨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함.

※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6. 23.)

- 한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디지털 기술의 오용으로 인한 자의적·불법적 감시가 야기하는 위축효과에 우려를 표명함.
-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기술이 민주적 제도와 시민사회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별보고관에게 질의함.

○ 새로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A/HRC/62/67)

-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권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업의 영향력이 결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확산, 생

성형 AI를 활용한 정보조작, 소수 빅테크 기업의 정보공간 독점 및 국제인권규범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국가가 국가안보, 테러방지,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언론인, 인권옹호자, 환경운동가 및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인터넷 차단, 온라인 검열 및 디지털 감시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또한 일부 국가는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는 반면, 다른 견해와 비판적 표현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으로 도구화되고 있다고 우려함.
- 특별보고관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접근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허위조작정보 확산, 혐오표현 증폭, 선거 개입, 온라인 성폭력, 언론 생태계 약화 등 다양한 인권상 위험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규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특히 소수의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이 민주적 통제 없이 세계 정보환경을 좌우하는 '기술 과두정 (tech oligarchy)'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하면서 표현의 자유보다 상업적·지정학적 이익이 우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특별보고관은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와 기업 모두가 표현의 자유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플랫폼 및 AI 기업에 대한 인권 실사와 투명성 강화, 독립적인 규제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플랫폼 독점 완화와 건강한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6. 17.)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보 접근권의 자의적 제한, 불법사찰, 허위조작정보, 인권옹호자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과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특별보고관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협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질의함.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농식품 산업, 식량안보 그리고 인권(기업인권 실무그룹, A/HRC/62/36)

-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식량안보 정책과 농식품 시스템 전환이 국제인권규범 및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부합하여 설계·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현재 각국은 식량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식량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수탈, 강제노동, 아동노동, 환경오염, 식량 접근권 침해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정책이 새로운 인권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식품 부정행위(food fraud)를 식량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제시함. 식품의 불법 혼합·위조, 허위 표시·광고(그린워싱), 종자 정보 조작, 위조 농약·비료 유통, 식량지원제도 악용 등은 소비자의 건강권과 식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규모 농민, 선주민, 농업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권리를 악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을 저해한다고 분석함. 또한 식량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참여 부족, 정보 접근성 미흡, 효과적인 구제수단 부재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됨.
- 보고서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따라 농식품 산업 전반에 인권 실사를 강화하고, 식품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FPIC) 보장, 소규모 농민 및 비공식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식품 표시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표준화, 공급망 추적체계 구축, 독립적인 감독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을 우수사례로 제시하며, 식량안보 정책 전반에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통합할 것을 제안함.
- 나아가 실무그룹은 국가에 △식량안보 관련 법·제도에 인권 기준 명시 △농식품 산업에 대한 인권실사 및 공급망 관리 강화 △피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 확대 △식품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효과적인 사법·비사법적 구제제도 마련 △국가기관 간 정책 조정과 국제협력 강화를 권고함. 또한 기업에는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식별·예방·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운영할 것을 촉구함.

○ 빈곤의 구조적 재생산(빈곤 특별보고관, A/HRC/62/42)

- 특별보고관은 빈곤과 불평등은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발전의 부산물이 아니라 조세·노동·사회보장·교육 등 제도적 선택에 의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문제라고 지적함. 현재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한 2030년 빈곤 종식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 접근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함. 특히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이동성을 저해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하여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빈곤 해소를 위해 △조세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사후 재분배(post-market redistribution)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통한 시장 구조 개선(in-market inclusion) △아동, 교육, 주거, 보건 등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한 기회의 평등 확보(pre-market social investment)라는 세 가지 정책 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빈곤은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기회 불평등의 결과인 만큼, 사회이동성, 지역격차, 돌봄 노동, 비공식 노동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특별보고관은 국가가 인권에 기반한 국가 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하여 빈곤 당사자가 정책의 설계·이행·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와 장기적 재정계획, 구속력 있는 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빈곤 측정 시 소득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 사회이동성, 사회적 배제 등을 함께 평가하고,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가 정책 이행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자체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기존 개발모델에서 벗어나, 인권과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경제성장을 넘어선 빈곤퇴치 로드맵(Roadmap for Eradicating Poverty Beyond Growth)'을 제시하며, 보편적 사회보장과 기본서비스 확대, 누진적 조세 강화, 돌봄경제 지원, 생태적 전환 및 국제경제질서 개선 등을 통해 모두의 권리와 복지를 중심에 둔 '인권 경제(Human Rights Economy)'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기후와 건강으로 식량 시스템 전환하기(기후변화 특별보고관, A/HRC/62/44)

- 특별보고관은 현재의 산업화된 식량 시스템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제품(농약·화학비료·플라스틱)에 대한 의존을 통해 기후변화뿐 아니라 건강권, 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및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대규모 농식품 기업의 시장집중과 자원 독점이 선주민과 소농의 생계 및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효과적인 기후대응을 위해 식량시스템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뿐 아니라 탈화석연료화(defossilization) 및 무독성화(detoxification)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농약, 화학비료,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식품 폐기물 감소, 건강한 식생활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인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함.
- 나아가 국가가 대규모 농식품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권실사와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화석연료 기반 농업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함.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허위조작정보와 기업의 정책 왜곡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인권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주민과 소농, 여성 주도의 농생태학(agroecology), 소규모 생태기반 어업 및 목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함. 또한 국제사회에는 기후재원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채경감 과 보조금 개혁, 국제금융기관의 인권기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식량시스템 전환을 지원할 것을 촉구함.

※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6. 19.)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식량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식량시스템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생산뿐 아니라 가공·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식량시스템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조치에 대해 특별보고관에게 질의함.

○ **교육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교육과정, 교수법 및 평가(교육권 특별보고관, A/HRC/62/39)**

- 특별보고관은 교육권은 단순히 학교에 접근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질까지 포함하는 권리이며,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법(pedagogy) 및 평가(assessment)는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전인적 발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민주사회 참여 역량, 평화와 관용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교육과정·교수법·평가가 서로 불일치할 경우 교육권의 실질적 실현이 저해된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인권 기반 교육의 핵심 원칙으로 △아동 중심 및 학습자 역량 강화 △학업성취보다 학습자의 웰빙 우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증진 △아동의 실질적 참여 보장 △비차별·포용 및 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언어적 정체성 존중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적응성 △교육과정 결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시함. 또한 교육과정은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반영하고, 정치적·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감성지능, 공감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문해력 및 회복탄력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아울러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포괄적 성교육 등을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필수 학습영역으로 제시함.
- 보고서는 현재의 표준화된 시험 중심 평가체계가 학생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이에 따라 학습자의 성장과 피드백을 지원하는 형성평가를 확대하고, 포트폴리오·프로젝트·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존엄, 포용성, 웰빙 및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함.

※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6. 17.)**

- 한국 정부는 교육이 모든 학습자의 잠재력과 존엄을 실현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대한민국의 고교학점제 및 사회·정서학습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학습자 중심의

다양화된 교육과 교육의 형평성 및 질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고려해야 할 방안에 대해 특별보고관에게 질의함.

3) 디지털, 인공지능·기업과 인권

○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실사와 국가의 의무(유엔인권최고대표, A/HRC/62/33)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 보호, 평등,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법절차 및 사회보장 등 광범위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알고리즘 편향, 대규모 감시, 자동화된 의사결정,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 및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기존의 인권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AI의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인권 존중·보호·실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함.
- 보고서는 국가가 AI를 개발·조달·배치·활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투명성, 설명가능성, 의미 있는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및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함.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 개인정보 침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AI로 인한 실제·잠재적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위험을 충분히 완화할 수 없는 고위험 분야에서는 AI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별히 국가는 민간기업의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감사(audit), 공공조달 기준 및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함. 아울러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인권책임을 강화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AI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학계, 기술전문가, 기업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부문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AI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유엔인권최고대표, A/HRC/62/25)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기업이 인권실사와 피해구제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참여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및 참여의 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새로운 인권 위험도 수반한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디지털 도구의 개발·활용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meaningful stakeholder engagement)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디지털 도구가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권리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인권위험 식별,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함. 다만 일방향적 정보수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속적인 대화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참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기업은 디지털 도구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별과 편향, 노동조합 활동 위축, 보복 위험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함.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인간의 개입과 검토를 보장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기술이 기존의 권리보호 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회원국이 기업의 디지털 이해관계자 참여가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책과 법제를 마련하고, 기업은 디지털 도구를 인권실사 및 피해구제 체계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도구 개발자 역시 인권 원칙을 제품 설계와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4) 여성·아동·소수자 인권

○ 여성과 소녀의 인권, 인공지능 그리고 관련된 디지털 기술(여성차별 실무그룹, A/HRC/62/48)

- 여성차별 실무그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여성과 여아의 삶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평등을 증진할 잠재력이 있는 동시에 기존의 성차

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함. 보고서는 AI의 설계·개발·활용 전 과정이 페미니즘적 접근(feminist approach)과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에 기초해야 하며, AI 거버넌스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할 것을 촉구함

- 보고서는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제조건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AI를 통한 여성·여아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 ▲공공·정치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의 실질적 참여와 리더십 확대를 제시함. 특히 AI는 금융 접근성, 교육, 의료서비스 및 돌봄 지원 등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편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채용, 교육, 의료 등에서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보고서는 AI가 무력분쟁, 대규모 감시, 개인정보 침해, 기후위기, 온라인 성폭력 등 새로운 인권위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자율살상무기의 금지, AI 기반 감시기술의 규제,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 인권활동가와 언론인 보호 등을 AI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실무그룹은 회원국에 성인지적 AI 법·제도 마련, 성별영향평가와 인권실사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기반 감시 및 기술매개 젠더폭력 규제,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등을 권고함. 아울러 유엔에는 성인지적 AI 국제기준 마련과 역량강화를, 기업에는 AI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인권실사 실시, 데이터 편향 개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피해구제체계 구축을 촉구함.

※ 여성차별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6. 24.)

-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는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 등을 통해 기존의 차별과 성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수사·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을 소개하고, 여성·여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AI의 인권 친화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레즈비언, 양성애자, 퀴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성소수자 독립전문가, A/HRC/62/46)

- 독립전문가는 레즈비언·양성애자·퀴어(LBQ) 여성들이 성적지향과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결합하면서 건강권, 재산권, 상속권, 가족생활, 노동권, 주거권 및 사법접근권 등 다양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많은 국가에서 LBQ 여성은 여성정책과 LGBT 정책 모두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못해 정책과 통계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비가시성(structural invisibility)'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차적(intersectional) 접근에 기반한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LBQ 여성이 가족과 지역사회, 직장, 의료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강제결혼, 교정강간(corrective rape), 가정폭력, 혐오범죄, 고용차별, 의료서비스 거부 및 경찰·보안기관에 의한 폭력과 자의적 구금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함. 또한 법적 가족관계 미인정으로 인해 주거, 재산·상속, 부모권, 생식의료 접근 등에서도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 아울러 보고서는 LBQ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국가 통계와 정책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영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확대하고, 혐오범죄와 차별 피해를 신고·구제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의료, 교육, 사법 및 보호서비스 전반에서 차별금지와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성별기반폭력으로 인정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독립전문가는 회원국에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과 성도덕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또한 동성커플의 가족관계 및 부모권 인정, 생식의료 접근 보장, 인권옹호자 보호,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폭력 방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LBQ 여성의 실질적 평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함.

5) 이주민 인권·인종차별

○ 스포츠와 인종주의(인종주의 특별보고관, A/HRC/62/55)

- 특별보고관은 스포츠가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구조적 불평등, 차별적 규정, 혐오표현, 대표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여전히 스포츠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함. 특히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은 교차적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을 경험하며 스포츠 참여와 발전 기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분석함.
- 보고서는 빈곤과 사회경제적 격차, 분쟁과 강제이주, 차별적인 선수 자격 규정 등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함. 특히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동 제한, 스포츠 시설 파괴 및 선수에 대한 폭력 등으로 스포츠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일부 국제 스포츠 규정은 특정 인종·민족 집단과 여성 선수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특별보고관은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선수 선발과 포지션 배치 과정에서도 인종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경기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선수와 관중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언행과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포츠 단체와 관계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여 실효적인 구제와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별보고관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에 인종·민족별 통계 수집, 스포츠 접근성 확대, 차별적 자격 규정 개선, 스포츠 거버넌스 내 다양성 제고, 혐오표현 및 인종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권고함. 아울러 스포츠 행사 개최와 운영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반인종주의 정책과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스포츠가 평등과 포용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주 거버넌스의 외주화(이주민 특별보고관, A/HRC/62/35)

-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난민심사, 국경관리, 송환 등 이주 관리 기능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이주 거버넌스의 외주화(externalization)'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방식은 이주민과 난민의 보호보다 입국 억제

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운영되며, 국제보호 접근을 제한하고 제3국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 위반 위험을 높인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외주화의 주요 유형으로 ▲국경 도달 자체를 차단하는 입국 방지 ▲제3국에서 난민심사를 실시하는 역외 난민심사 ▲제3국으로의 송환(return hubs 포함)을 제시함.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의 최근 정책 사례를 분석하며, 이러한 조치가 집단추방,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 미보장, 연쇄 강제송환(chain refoulement), 디지털 감시기술 남용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함.
- 특히 외주화 정책은 아동, 여성, 성소수자, 인종적·민족적 소수자 등 취약 계층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분리, 성폭력 및 인신매매 위험 증가, 장기 구금, 의료·교육 접근 제한 등 복합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함. 또한 국경감시를 위한 생체정보와 AI 기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인종 프로파일링 등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이 이주 관리 기능을 외주화하더라도 국제인권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모든 이주협력 협정에 구속력 있는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사전 인권영향평가와 독립적 모니터링 및 고충처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아동의 외주화 대상 제외, 성인지적 보호조치 강화, 디지털 감시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규율,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경로 확대 및 책임공유 중심의 지속가능한 이주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함.

4 유엔 인권이사회 20주년 기념 고위급 토론

-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개최된 고위급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난 20년간 인권이사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함. 특별절차, UPR, 인권이사회 산하 조사 메커니즘 등을 통한 국제인권체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분열과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확대, 특별절차의 독립성 보장, 청년 참여 확대 등을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무력분쟁, 권위주의 확산, 차별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제 인권상황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인권은 평화와 개발을 뒷받침하는 유엔의 핵심 가치를 강조함.

○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

- 지난 20년간 인권이사회가 특별절차, UPR, 인권이사회 산하 조사 메커니즘 등을 통해 국제인권규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앞으로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보다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권고의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국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특별절차 등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 생태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인권체계의 독립성과 보편성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함.

○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 초대 인권이사회 의장

- 인권이사회 설립 당시 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기존 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UPR, 특별절차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함.
- 인권이사회는 성과는 제도 자체보다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협력에 달려 있으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카를로스 D. 소레타 필리핀 상임대표

- 인권이사회는 국가 간 대립의 장이 아니라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ASEAN의 경험을 소개하며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협력,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설명함.

○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특별보고관

-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국가들이 특별절차 권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민사회 및 인권옹호자의 참여 공간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 아미나 부야쉬 GANHRI 의장

-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이행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임. 이에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의회, 사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UPR, 특별절차, 조약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여러 국가에서 위협받고 있다며,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성 보장, 충분한 재정 및 법적 권한 확보가 국제인권체계의 신뢰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나아가 시민사회, 청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함.

○ 말락 Plan International 글로벌 청년 대사

- 청년은 인권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인권 의제에서도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5 신규 선출된 특별절차 수임자

○ 제62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총 4명의 특별절차 수임자가 새로 선출되었음.

명칭	신규 수임자(국적)
특별절차 수임자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서니 카니 알름로트(Bethanie CARNEY ALMROTH, 스웨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레오폴도 말도나도 구티에레스(Leopoldo MALDONADO GUTIERREZ, 멕시코)
건강권 특별보고관	마리앙젤라 시망(Mariangela SIMAO, 브라질)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파우 페레스 살레스(Pau PEREZ SALES, 스페인)

참고 1. 제62차 인권이사회 결의 한국 정부 투표 현황(괄호 안은 발의국)

	제목	찬성-가권-반대
1	수단에서 진행 중인 분쟁 상황에서 엘오베이드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권상황(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투표 없이 채택
2	에리트레아 인권상황(사이프러스(EU 대표))	23-17-6 한국정부 찬성
3	미얀마의 로힝야 무슬림 및 기타 소수자의 인권상황(파키스탄(이슬람협력기구 대표))	투표 없이 채택
4	무력분쟁에서 인도적 접근의 방해 및 거부와 인도주의 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쿠웨이트,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투표 없이 채택
5	기업과 인권(아르헨티나)	투표 없이 채택
6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우간다(비동맹국가 대표))	29-1-16 한국정부 반대
7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멕시코, 뉴질랜드)	투표 없이 채택
8	교육권(포르투갈)	투표 없이 채택
9	허위조작정보가 인권의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우크라이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	투표 없이 채택
10	즉결처형·약식처형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직(스웨덴, 핀란드)	투표 없이 채택
11	의사 표현의 자유(캐나다, 브라질, 피지, 나미비아, 네덜란드)	투표 없이 채택
12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배심원 및 참심원의 독립성, 변호사의 독립성: 판사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직(헝가리, 호주, 보츠와나, 몰디브, 멕시코, 태국)	투표 없이 채택
13	돌봄 및 지원 체계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멕시코, 스페인, 아이슬란드)	투표 없이 채택
14	인권과 기후변화(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투표 없이 채택
15	한센병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일본, 브라질, 에콰도르, 이디오피아, 피지, 인도,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투표 없이 채택
16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전문가 직(쿠바)	29-1-16 한국정부 반대
17	총기의 민간 취득·소지 및 사용과 인권(에콰도르, 페루)	투표 없이 채택
18	인도적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의 완전한 향유 증진, 보호 및 존중(콜롬비아, 피지, 조지아, 일본, 시에라리온, 스웨덴, 우루과이)	투표 없이 채택

19	아동·조혼 및 강제결혼(스위스, 캐나다, 온두라스, 이탈리아,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폴란드, 시에라리온, 태국, 우루과이)	투표 없이 채택
20	무력분쟁에서의 의료 보호(카타르)	투표 없이 채택
21	인권과 소외열대질환(말라위, 부키나파소, 감비아, 케냐, 모로코, 탄자니아)	투표 없이 채택
22	사회포럼(쿠바)	투표 없이 채택
23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메커니즘을 위한 자발적 기금 강화(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피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투표 없이 채택
24	포르투갈어권 공동체(CPLP) 회원국에 대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포르투갈, 앙골라, 브라질,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동티모르)	투표 없이 채택
25	디지털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감비아, 그리스, 카타르)	투표 없이 채택
26	남수단에 대한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케냐(아프리카 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27	인권이사회 출범 20주년(멕시코, 카보베르데, 에스토니아, 모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태국)	투표 없이 채택
28	극심한 빈곤과 인권(프랑스, 알바니아, 벨기에, 칠레, 모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투표 없이 채택

참고 2. 제62차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상국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린 권고

국가	한국 정부 권고사항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 미비준 핵심 국제인권조약,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 파리원칙을 준수하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 -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과 기후 회복력을 갖춘 용수공급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집중하여 외부도서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배분할 것
레바논	-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를 예방하고, 피해자 식별과 보호 보장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추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화할 것 - 이주민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고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난민 보호를 개선할 것
모리타니아	- 여성, 아동, 소수집단의 국적 계승의 평등을 보장하고 무국적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적법을 개정할 것 - 여성성기절제와 아동혼인 등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 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한 노력을 강화할 것 - 관련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난민 및 난민신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나우루	- 권고사항 없음
르완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미비준 인권 조약 가입을 고려할 것 - 차별적 관행과 관습 및 젠더에 기반한 고정관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 - 과밀수용 문제 대응 등 구금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
네팔	- 언론인과 인권옹호자가 괴롭힘과 감시, 부당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고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모든 지방정부가 의무 및 무료 교육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의 포용적 교육 접근을 보장할 것 - 효과적인 법집행과 대중 인식 제고를 통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 및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오만	- 법률과 관행상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여 취할 것 -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것
오스트리아	- 구조적 인종주의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교육을 확대할 것 - 가족 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이주민 및 난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호주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 교육과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애보리진(호주 선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주민, 난민신청인, 난민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
조지아	- 사법부의 독립성, 책무성,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 개혁에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일 것 - 시민사회와 언론이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국내실향민의 권리, 특히 사회 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세인트 키츠네비스	- 권고사항 없음
상투메 프린시페	- 권고사항 없음